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 ▶ 일시: 2014년 11월 7일(금) 14:00~16:00
- ▶ 장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실

워크숍 세부일정

사회: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간	내용
14:00 ~ 14:20	참석자 소개 및 워크숍 진행 안내
14:20 ~ 14:50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V」의 인권영역별 정책과제 소개
14:50 ~ 15:00	휴식
15:00 ~ 16:50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V」의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학계 및 현장,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수렴
16:50 ~ 17:00	기타 정책자문 및 종합토론

목 차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관련 정책과제(안)	1
과제 I-1. 아동·청소년 참여 및 권리 조항(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3
과제 I-2. 아동·청소년 인권 기구 및 조직 강화	7
과제 I-3.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10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관련 정책과제(안)	13
과제 II-1.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 자치권 활동 및 종교의 자유 보장	15
과제 II-2. 학교밖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의 강화	17
과제 II-3. 청소년 권리 및 참여기구 인지도 확대 방안	20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관련 정책과제(안)	23
과제 III-1.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및 전문 인력 확충	25
과제 III-2. 입양 홍보사업 다각화 및 사후관리서비스 강화를 통한 입양 활성화	28
과제 III-3. 요보호아동의 가정환경양육을 위한 일반가정위탁제도 확대	31
과제 III-4. 가출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생활환경 개선	34
4.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관련 정책과제(안)	37
과제 IV-1.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 발달 지원확대	39
과제 IV-2.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젝트 수행 및 지원체계 구축	42
과제 IV-3. 장애청소년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학교인턴제 운영 및 학교배치 의무화	45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관련 정책과제(안)	49
과제 V-1. 학교부적응 예방을 위한 중학생 직업준비 학교체제 도입	51
과제 V-2. 초·중·고 도덕 교과목 필수 이수단위 제도 도입	55
과제 V-3. 청소년의 여가·문화 향수 권리 회복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58
6. ‘특별보호조치’ 관련 정책과제(안)	63
과제 VI-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65
과제 VI-2. 근로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부당처우 대응 프로그램 개발	68
과제 VI-3. 성매수·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71
과제 VI-4. 소년사법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친화적 절차 도입 및 소년전문법원 설립	74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관련
정책과제(안)**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한 인권일반의 주요 지표 중의 하나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제도의 발전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법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에 관한 법조항이 부재하거나 미약한 실정이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제5조의2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관련 조항이 있으나, 청소년 참여 및 권리 활동에 관한 내용은 법률적 개념정의 조차 안되어 있는 실정이다. 유엔도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권교육훈련선언(2011.12)’을 선포하였으며 유엔 제1, 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2005년, 2010년)’에서 초·중·등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공무원 및 군대 등에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법률이 미비하여 유엔의 인권교육 관련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의 실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2014년 10월 10일 인권교육지원법안도 발의된 상태이다. 법은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합의이자, 관련 정책 및 예산을 수립하는 기본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참여 및 권리 조항(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참여 및 권리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2) 주요 내용

①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 기구·조직, 홍보에 관한 조항 신설

현재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제5조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자치권 확대에 관한 내용만 법조항으로 존재한다. 제3조(정의)에서도 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에 있어서도 권리 및 참여 관련 내용들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것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가 75.8%,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중 82.9%가 '아니다'로 응답,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 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72.2%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홍보와 관련해서도 모바일, 앱 개발 등의 다각화를 모색해야 하며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권리 및 참여 증진에 관한 범조항 신설

현행 아동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을 살펴보면,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으나, 차별, 안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이념에 관한 내용만 담겨져 있어 보다 적극적 차원의 아동권리 및 참여활동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아동·청소년 인권기구 및 조직, 옴부즈맨, 전문적인 권리 모니터링 주체에 관한 조항 추가

2014년 8월 27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조 ⑧ 아동청소년인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이하 내용이 신설되어 있다.

1. 아동·청소년인권,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 모니터링, 권고 및 의견표명
3. 아동복지시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내 인권침해 및 아동·청소년 대상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항의 조사 및 직권조사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구제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사항 연구와 권고 및 의견표명
5. 제3호와 관련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6. 제3호에 따른 조사 대상 기관 관련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

그러나 이는 대통령령 제25575호(2014.8.2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 중 아동·청소년인권팀에 관한 사항은 2017년 7월 31까지 유효한 실정이다. 이러한 규정을 2017년 8월 이후도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법 조항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침해 내용이 언제든지 구제가 가능하도록 ombudsman 제도에 관한 내용, 전문적인 권리 모니터링 주체에 관한 조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 개정이 필요하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5~2016년) : 사회적 합의 도출

현 실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면 기존 성인 인권에 반하는 것으로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인권의 올바른 인식과 아동·청소년 권리 및 참여확산을 위한 관계자들의 이해,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② 제 2단계(2017~2018년) : 법·제도화 실시

국민적 합의 또는 법률,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주도로 법안을 제·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한다.

③ 제 3단계(2019년~) : 법·제도 시행

아동·청소년 권리 및 참여확산을 위한 법·제도 제·개정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대대적인 인식을 확산하도록 한다.

추진단계	제1단계 (2015~2016년)	제2단계 (2017~2018년)	제3단계 (2019년~)
주요내용	사회적 합의 도출	법·제도화 실시	법·제도 시행

4) 관련법 개정 사항

청소년기본법·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한다. 또한 관련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교육지원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3단계 (2019년~)	법·제도 시행	추후 예산 반영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인권 기구 및 조직 체계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미흡,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불안정성, 청소년희망센터의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아동·청소년 인권 기구 및 조직 기능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정부부처의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를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청소년권리 모니터링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력 양성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 청소년희망센터도 역할 및 조직이 강화되어 '청소년인권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2) 주요 내용

①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상설화 및 정상화

2003년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총괄 조정하는 상설중앙기구를 설치하라는 권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2004년 개정 아동복지법 내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으나, 2010년 3월 아동·청소년 업무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활동이 일시 정지되었다. 약 5년 8개월만인 2013년 7월 19일에 위촉식을 겸하여 국무총리와의 오찬형태로 다시 개최되었고, 이후 2014년 2월 28일에는 제5차 아동정책조정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실질적 기능 측면에서는 아직 많이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소년정책기본계획까지 포함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이 수립되어 범부처간 협의·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여성가족부 정부부처의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명칭 변경¹⁾

2014년 7월 8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성가족부'와 관련 "국회 여성가

1) 여성신문(2014.7.9.). 김희정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 적극 추진" 여성신문 웹 사이트 <http://www.womennews.co.kr/news/73541>에서 2014년 11월 4일 인출.

족위원회에서 합의가 된다면 기관명을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바꾸는 것을 (청와대 등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선 전임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부처 이름에 청소년이 들어가면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고 자부심도 생길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여성청소년가족부의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다.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안전의 문제가 대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형국에서 "여성청소년가족부"의 명칭 변경을 통해 청소년 인권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어야 할 것이다.

③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권리참여과 신설

현재 청소년권리참여과 관련된 담당부서는 여성가족부내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부서는 이 외에도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과, 청소년매체환경과, 권익증진국의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등이 있다. 청소년기본법을 비롯한 제5차청소년기본계획에서도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고 있는데 비해 현재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과' 형태의 담당부서는 부재한 실정이다. 향후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라도 '청소년권리참여과'가 반드시 신설되어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④ 청소년희망센터의 역할 기능 및 조직 강화

2003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가 실시된 이래로 중앙차원의 청소년 권리보호 전담기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 '청소년희망센터'란 명칭으로 존재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을 담당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 및 복지를 지원하는 상담복지센터가 17개 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동·청소년 인권의 문제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및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는 현재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희망센터의 역할 및 조직을 강화하고 정책적 효과성을 검증하여 전국 시도센터에 '청소년인권센터'의 명칭으로 설치·운영되어 아동·청소년 인권 기반을 확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5~2016년) : 아동·청소년 인권 기구 및 조직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청소년기관·시설·단체를 비롯한 범국민적 여론 형성을 통한 정부부처 청소년정책 명칭 변경 업무 부서 및 지자체 관련 기관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또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상설화 및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도록 한다.

② 제 2단계(2017~2018년) : 관련 법 제·개정

아동·청소년 인권 기구 및 조직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법안을 제·개정하도록 한다.

③ 제 3단계(2019년~) : 법·제도 시행 및 청소년희망센터 전국 확산

아동·청소년 인권 기구 및 조직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을 시행하고 청소년희망센터를 ‘청소년인권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전국적으로 설치, 확대 운영하도록 한다.

추진단계	제1단계 (2015~2016년)	제2단계 (2017~2018년)	제3단계 (2019년~)
주요내용	아동·청소년 인권 기구 및 조직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관련 법 제·개정	법·제도 시행 및 청소년희망센터 전국 확산

4) 관련법 개정 사항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다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을 명시하도록 한다. 여성청소년가족부로의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청소년권리참여과 신설 및 청소년희망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3단계 (2019년~)	법·제도 시행 및 청소년희망센터 전국 확산	추후 예산 반영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 플랜을 발표하고 UN아동권리협약과 '12년 제정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등에 규정된 내용들을 구체적인 정책·사업으로 발전시켰다. 종합계획은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는 인권도시 서울'을 정책비전으로 ▲주도와 참여 실현 ▲적극적 인권보장 추진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3대 정책목표 아래, 12개 추진과제, 31개 세부실행과제로 구성된다²⁾. 또한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시정(市政)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 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권고하는 '어린이청소년 전문 시민인권보호관'을 운영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인권보호관 3명 중 1명이 담당하며, 시민인권보호관은 '16년까지 5명으로 늘린다.

성북구 역시 '아동친화도시'로 어린이의회 '아동권리워크숍' 등을 개최하였다³⁾. 2013년 우리나라 최초로 유니세프(UNICEF)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성북구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정책 사업과 의회활동 등 구정에 관심 있는 초·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워크숍에서 4개 위원회(교육·문화·인권·복지)가 제안한 내용과 어린이들의 의견은 '2015년 학생참여예산사업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열린토론회'에 정식 논의될 예정이다.

전주시가 역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기로 했다⁴⁾. 1단계로 아동친화도시 전담팀을 구성·발족함과 동시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친화도시 시행을 위한 중기(3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고 관련조례 제정 등도 나서게 된다. 2단계에서는 시립 돌봄센터와 시립도서관 확충, 청소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유아숲체험장, 어린이체험농장 설치 등 유니세프에서 요구하는 아동친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인프라 개발 및 구축에 나선다. 또한 어린이 친구 페스티벌과 어린이 참여 동요제, 청소년 영화제, 청소년 동아리 축제, 청소년 합주단, 어린이 축구교실 등 아동친화사업 발굴 및 시행, 활성화에 들어간 뒤, 최종 3단계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시 역시 2016년까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 기반 구축에

2) 무비조이(2013.4.9.1),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플랜' 발표 웹 사이트 http://moviejoy.com/public/e_view.asp?db=pubic&num=5491에서 2014년 11월 4일 인출.
 3) 뉴스1(2014.8.14.), '아동친화도시' 성북구, 어린이의회 '아동권리워크숍' 개최 웹 사이트 <http://news1.kr/articles/?1815443>에서 2014년 10월 31일 인출.
 4) 뉴시스(2014.9.1.), 전주시 민선6기 4대 핵심과제 91개 사업 내용, 웹 사이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31_0013141484&cID=10808&pID=10800에서 2014년 10월 31일 인출.

나서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서울, 광주, 전라북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인권친화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2) 주요 내용

①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중앙차원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거나 이와 관련된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널리 알리도록 한다.

② 아동·청소년 인권친화도시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인권친화도시 모델을 선정하고 사업의 효과성 및 정책적 효과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여 이를 널리 보급하도록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5년) :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별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시 이와 관련된 소정의 재정을 지원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을 독려하도록 한다. 혹은 물질적 지원은 아니더라도 전문가 연계 협의, 절차과정상의 지원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별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이 용이하도록 노력해준다.

② 제 2단계(2016~2017년) : 아동·청소년 인권친화도시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인권친화도시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기초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③ 제 3단계(2018년~) : 아동·청소년 인권친화도시 모델 보급

아동·청소년 인권친화도시 운영의 잘된 사례를 발굴하고 그 효과성에 대해 널리 보급하도록 한다.

5) 전북일보(2014.9.22), 군산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웹 사이트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24853>에서 2014년 10월 31일 인출.

추진단계	제1단계 (2015년)	제2단계 (2016~2017년)	제3단계 (2018년~)
주요내용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재정 지원	아동·청소년 인권친화도시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인권친화도시 모델 보급

4) 관련법 개정 사항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개정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제1단계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재정 지원	· 재정지원	10,000,000×10지역	100
제2단계 (2016~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친화도시 모니터링	· 조사연구	50,000,000원	50
제3단계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친화도시 모델 보급	· 우수사례 포상 · 사례집 발간 및 보급	30,000,000원 50,000,000원	80
			총계	230

2

.....

‘시민적 권리와 자유’ 관련 정책과제(안)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본 인권실태조사에서 일반/특목/자율고의 ‘학급회의 운영되지 않는다’는 비율 55.8%로 나타났으며,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38.5%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다. 종교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응답으로만 분석한 결과,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40.6%(그런 편이다 27.4%, 매우 ‘그렇다’ 13.2%), ‘그렇지 않다’는 59.4%(그렇지 않은 편이다 19.8%, 전혀 그렇지 않다 39.6%)로 나타나 60%에 가까운 종교학교가 학생들의 종교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내용

① 학생자치활동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학생자치활동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회 운영에서 자율권 보장, 학생회 독립성, 임원후보의 자격 제한, 학생회 활동 지원 등을 통해 학급회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정상화 되도록 한다. 또한 교칙 제·개정시 학생 참여 허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학생의 자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한다.

②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적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학교 홍보, 종교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대체과목의 필수화, 종교의식 등에 대한 참석 강요 및 입학 후 학교에서 전학을 강요하는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5년~2016년) : 학생자치활동 연구학교 및 종교적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가칭) 학생자치활동 연구학교 지원을 통해 학급회의, 학생회, 교칙 제·개정시 학생 참여 등이

가능토록 한다. 또한 종교학교의 경우, 종교적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우수 사례를 발굴, 보급하도록 한다.

② 제 2단계(2017~지속)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운영 확대

학생 자치활동 및 종교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대체과목의 필수화, 종교의식 등에 대한 참석 강요 및 입학 후 학교에서 전학을 강요하는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성공적으로 학생 자치활동을 운영한 학교의 경우, 그 성공요인과 시사점 도출을 통해 보다 많은 학교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진단계	제1단계 (2015~2016년)	제2단계 (2017년~지속)
주요내용	학생자치활동 연구학교 및 종교적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운영 확대

4) 관련법 개정 사항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학생자치활동 지원 의무 규정을 구체화 하도록 한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5조 2의 자치권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가하도록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제1단계 (2015~2016년)	연구학교 운영	· 연구학교 운영 10,000,000원 × 100개교 · 종교학교 지원 5,000,000원 × 100개교	1,500
제2단계 (2017년~지속)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연구조사비 100,000,000원 × 1종 · 연구학교 확대 지원 10,000,000원 × 100개교	1,100
		총계	2,600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조사에서 인권교육을 경험한 장소로는 전체의 59.7%가 학교 정규교과시간으로 응답했으며,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35.6%, 학교 밖 인권교육 프로그램 17.3%, 기타 4.6%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을 경험한 장소는 가정이 67.5%로 가장 높아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학원 수업시간 21.2%, 방송 프로그램 6.9%, 인터넷 사이트 4.3%에서 인권교육을 경험하여 사회에서의 인권교육 역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 25.7% 경험,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23.7% 경험, 부모님(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30.4%,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22.0%로 나타나 부모 및 학교교사의 체벌 및 욕설에 대한 교육이 보다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만나는 각 현장별, 직무별 인권교육 내용을 심화하여 인권에 기반한 실천이 가능하도록 관련 교재 및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홍보를 다각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주요 내용

①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나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관계자 대상의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실시 공공성을 대표로 담보하는 국회나 정부관계자 대상의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법안 및 행정에 있어 아동·청소년 친인권적 문화를 형성하도록 한다.

② 학교밖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기본 인권교육 20시간 필수화

학교밖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포함한 연간 기본 인권교육 20시간을 필수화하여 실무현장 적용에 용이하도록 지원해준다.

③ 학교밖 아동·청소년 대상의 인권교육 실시

학업을 중단하거나 교정시설, 자립시설 등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밖 아동·청소년 대상의 인권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④ 학대 내용을 포함한 부모 및 교사, 일반인 대상의 대국민 홍보 강화
인권교육에 아동 학대 내용을 포함한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인권에 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하여
인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5년~2016년) : 각각의 직무에 맞는 인권교육 및 홍보자료, 체험 프로그램 개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각각의 직무에 맞는 다양한 인권교육 및 홍보자료와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아동·청소년 인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② 제 2단계(2017~2018년) : 학교밖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교밖 다양한 아동·청소년 인권실천 현장의 교육적 효과성을 평가하고 각 해당 담당자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 제 3단계(2019년~) :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홍보 다각화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포상하고 그 효과성을
전국 시·도에 널리 보급하여 확산하도록 한다. 또한 관련 앱(App), 모바일 버전 개발 등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인권교육의 접근용이성을 극대화하도록 한다.

추진단계	제1단계 (2015년~2016년)	제2단계 (2017~2018년)	제3단계 (2019년~)
주요내용	각각의 직무에 맞는 인권교육 및 홍보자료, 체험 프로그램 개발	학교밖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홍보 다각화

4) 관련법 개정 사항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권리 및 참여에 관한 내용 추가 범조항 신설, 인권교육지원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 신설하도록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제1단계 (2015~2016년)	직무중심의 인권교육 및 홍보자료, 체험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 및 매뉴얼 개발비 30,000,000원 × 4종 · 인쇄보급비 10,000원 × 1,200개교 × 3종 · 체험프로그램 개발비 50,000,000원 × 4종 	176
제2단계 (2017~2018년)	학교밖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5,000,000원 × 100개교 · 인권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5,000,000원 × 100개교 · 인권담당자 연수비 100,000원 × 2,000명 	210
제3단계 (2019년~)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홍보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 포상 30,000,000원 · 사례집 발간 및 보급 50,000,000원 · 어플 개발 운영, 보급 150,000,000원 	230
		총계	616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2014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조사 결과,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 여부에서는 ‘전혀 들어본적이 없다’의 비율이 전체 중 55%로 과반수 이상이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34.3%,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는 8.8%로 전체의 98.2%가 청소년 참여 기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봤어도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참여에 장애를 일으키는 이유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 34.2%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를 보다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2) 주요 내용

①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관련 온라인 홍보 강화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관련 앱(App), 플랩시몹, 홍보 동영상 등을 개발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주 접하는 사이트 및 메신저, 모바일 등 온라인상에서의 홍보를 강화하도록 한다.

②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관련 포스터 및 스티커 홍보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와 관련된 간단 포스터 및 홍보 스티커 제작 또는 공모를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이를 홍보하고 보급하도록 한다.

③ 전국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시설에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관련 포스터, 간단 리플렛, 스티커 홍보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와 관련된 간단 포스터 및 홍보 스티커, 리플렛 제작 또는 공모를 통해 전국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시설에 이를 홍보하고 보급하도록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5년) :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관련 홍보방안 조사 및 연구 실시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부합하는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관련 홍보방안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제 2단계(2016~지속) :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관련 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학교안밖의 다양한 아동·청소년 실천현장에서의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관련 홍보자료 제작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한다.

③ 제 3단계(2017년~2018년) :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홍보 사업의 효과성 연구

학교안밖의 다양한 아동·청소년 실천현장에서의 교육적 효과성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보급하도록 한다.

추진단계	제1단계 (2015년)	제2단계 (2016~지속)	제3단계 (2017년~2018년)
주요내용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관련 홍보방안 조사 및 연구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관련 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홍보 사업의 효과성 연구

4) 관련법 개정 사항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권리 및 참여에 관한 내용 추가 법조항 신설, 인권교육지원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 신설하도록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제1단계 (2015년)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관련 홍보방안 조사 및 연구	· 연구·조사비 5,000,000원 × 2종	10
제2단계 (2016~지속)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관련 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 제작비 100,000,000원 × 2종 · 보급비 50,000,000원	250
제3단계 (2017년~2018년)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홍보 사업의 효과성 연구	· 연구·조사비 5,000,000원 × 2종	10
		총계	270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관련 정책과제(안)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그동안 법적, 제도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이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37개소에서 2013년 50개소로 지난 10여년 동안 13개소만 증가하였다. 현재 이 50개소의 기관이 전국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례판정, 개입, 서비스 제공, 더 나아가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까지 감당하고 있어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매우 크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요구되지만,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이 더욱 필요하며, 특히 만성적인 학대, 중복학대, 재학대 등의 발생이 높아 사례종결이 쉽지 않고 지속적인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도 “더 많은 보호기관을 설립하고, 학대 및/또는 방임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을 지원하는 등 이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현재 인권지표 영역 중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중에서 ‘학대받는 아동·청소년 보호시설과 전문 인력 확충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2) 주요 내용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기능점검 및 종사자들의 직무분석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례건수와 서비스 내용들, 그리고 각 지역별 아동수와 발생건수 등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각 지역별 필요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소수가 산정되어야 한다. 특히 종사자의 직무분석과 관련해서는 가정폭력 및 친권과 같은 법적문제의 효과적인 해결과 민간인 신분에서 아동학대 사례 판정 조사 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상담원의 신분전환 또는 공무원 배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순차적 확대와 종사자 충원 및 처우 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각 지역별 적정 개소수가 파악되었다면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및 순차적 설치·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상담원들의 직무분석에 따른 지역별, 그리고 시설별 적정 인원수 산정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상담원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잦은 이직, 전직을 예방하도록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처우 개선에 힘쓸 필요가 있다.

③ 아동학대예방 및 가정기능 강화 사업 실시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은 아동학대 사례 판정 및 서비스 개입만으로도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이나 가정 내 학대예방을 위한 가정의 기능 강화사업 등에 집중하기 어렵다. 아동전문기관의 확대 및 종사자 충원과 처우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매진할 필요가 있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5년~2016년)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기능점검 및 종사자들의 직무분석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적정 수, 종사자의 직무분석과 더불어 지역사회 기관(예,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의 업무분담 가능성(예, 서비스 연계 및 제공 등)에 대해서도 타진해 본다.

② 제 2단계(2016년~2017년)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순차적 확대와 종사자 충원 및 처우 개선

현재 시군구에 설치된 231개의 드림스타트가 전국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의 아동학대피해를 조사하고 사례판정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적극적인 예방사업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0~100개소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 매년 5~10%정도씩의 시설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상담원 충원을 통해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 3단계(2018년~계속) : 아동학대예방 및 가정기능 강화 사업 실시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업무부담으로 제한적일 수 있었던 현재의 아동학대예방 및 가정기능 회복 및 강화서비스를 좀 더 확대시킨다. 전국의 학교와 아동청소년관련시설 및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학대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와 같은 아동복지시설, 또 주민자치센터 등과 연계하여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상담서비스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5~2016년)	제 2단계 (2016~2017년)	제 3단계 (2018년~계속)
주요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 기능점검 및 종사자들의 직무분석	아동보호전문기관 순차적 확대와 종사자 충원 및 처우 개선	아동학대예방 및 가정기능 강화 사업 실시

4) 관련 법 개정 사항

아동복지법의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구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 시 관련 아동복지법 시행령(제 42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과 제 43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의 해당내용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4~2015년)에는 100백만원이 소요되지만, 2단계(2015~2016년)부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설치 및 종사자 충원에 따라 매년 2,500백만원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일정부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5~2016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 기능점검 및 종사자들의 직무분석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기능점검, 종사자들의 직무분석: 100,000,000	100
2단계 (2016~2017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순차적 확대와 종사자 충원 및 처우 개선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400,000,000×5 · 종사자 충원: 40,000,000×50	2,000 2,000
3단계 (2018년~계속)	아동학대예방 및 가정기능 강화 사업 실시	· 아동학대예방 교육·홍보 500,000,000 · 가정기능 강화 프로그램 500,000,000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400,000,000×5	500 500 2,000
		총계	7,100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전히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입양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와 입양자녀의 근본을 알 수 없어서 라는 이유로 입양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여전히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절차개선과 입양숙려제등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 사후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다. 입양자체보다 사후관리서비스의 중요성을 볼 때(입양아 사망사건 등 발생),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가 매우 시급하다. 특히 사후관리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서 특히 해외 입양아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도 강조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① 입양 홍보사업 다각화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학부모 및 기업체 직원 등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대상에 초점을 두는 교육과 함께, 가정이 필요한 아동들의 입양을 위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입양의 중요성과 입양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송 등의 언론매체나 인터넷 및 SNS와 같은 매체 등을 활용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② 국내외 입양 사후관리서비스 체계 강화 (단계별 실시)

중앙입양원을 중심으로 사후관리서비스를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사업기관을 위탁 공모하는 등 노력을 기하고 있다. 효과적인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및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기관의 역량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해외입양에 대해서도 국내 입양 사후서비스 기준에 준하도록 더욱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 및 기록 보관 등에 대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추진 절차

① 입양 홍보사업 다각화

입양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양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가정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시설에서의 양육이 아닌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입양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방식의 방송콘텐츠를 제작하고, 인터넷 및 SNS 등을 활용한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내외 입양 사후관리서비스 체계 강화

- 제1단계(2015~2016년) : 국내입양 사후관리서비스 시범 실시 및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적절한 사후관리서비스의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등 기반을 마련한다.
- 제2단계(2016~2017년) : 국외입양서비스의 경우에도 사후관리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외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시도하고 더불어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추진단계	입양 홍보사업 다각화(2015~)	국내외 입양 사후관리서비스 체계 강화	
		제1단계(2015~2016년)	제2단계(2016~2017년)
주요내용	· 방송콘텐츠 제작 및 확산 · 인터넷 및 SNS를 활용한 캠페인	국내 입양 사후관리서비스 체계 강화	국외 입양 시 파트너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후관리서비스 기반 마련

4) 관련 법 개정 사항

현 입양특례법 제 35조(사후서비스 제공)에서는 국내입양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하고 있고, 국외입양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향후 국외입양의 사후관리서비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입양 홍보사업 다각화의 경우는 1차년도에는 150백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사후관리서비스의 경우 국내외로 나누어 1단계(2015~2016년)에는 150백만원이, 그리고 해외입양 사후관리서비스를 시도하게 되는 2단계(2016~2017년)에는 5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입양 홍보사업 다각화	(2015~)	· 방송콘텐츠 제작	100,000,000원
		· 인터넷 및 SNS 통한 캠페인	50,000,000원
국내외 입양 사후관리서 비스 체계 강화	1단계 (2015~2016년)	· 국내 입양 사후관리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	50,000,000원
		· 사후관리서비스 모델 구축 및 홍보	100,000,000원
	2단계 (2016~2017년)	· 해외 입양 파트너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서비스 실시	50,000,000원
총계			350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아동의 성장환경으로서 시설보다 가정이 더 우선되며, 이를 기초로 그동안 국가적으로 가정위탁제도 실시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가정위탁의 대부분은 대리양육가정(조부모 양육)이나 친인척 위탁가정이 대부분으로 결국은 요보호 아동의 원가족 및 친족에 대한 의존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조부모나 친족에게서 위탁보호받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결국 시설보호형태의 양육을 받게 되며, 이는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성장발달환경의 결핍이 될 수 있다. 가정위탁제도가 매우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가정위탁은 혈연관계가 아닌 위탁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형태로 가정위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사회의 경우 혈연관계가 아니면서 입양의 형태도 아닌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미흡한 가운데 있으며, 현재의 일반가정위탁의 경우도 해외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일반가정위탁사업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시설보호를 줄이고 아동의 성장환경으로서의 가정위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금액의 현실화와 자격있는 위탁부모의 모집과 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주요 내용

①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혈연위주의 우리사회에서 조부모 및 친족에 의한 가정위탁이 아닌 비혈연관계의 일반가정위탁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아동의 성장환경으로서의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가정이 필요한 아동을 국가사회에서 공동 양육할 수 있다는 연대의식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 사업이 요구된다.

② 일반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현실화

현재 가정위탁 시 정부의 양육보조금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현재 아동 1인당 월 120,000원, 생계비지급 별도). 물론 조부모 및 친족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금액도 증액될 필요가 있으나, 일반위탁가정에 대한 지원금액의 현실화가 시급하며, 단계적인 인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③ 일반가정위탁제도 확대를 위한 유자격 위탁부모 모집 확대 및 훈련 강화

가정위탁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격 있는 위탁부모를 모집하고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금액 현실화를 기초로 하여 가정위탁에 관심있는 위탁부모들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통해 더욱 많은 아동이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탁가정에서의 학대나 방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부모에 대한 교육훈련과 위탁가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5년~2016년) :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가정위탁제도, 특히 일반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TV와 같은 방송매체와 신문, 그리고 인터넷 및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② 제 2단계(2016년~2017년) : 일반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현실화

조부모 및 친인척 가정위탁과 더불어 일반위탁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특히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비혈연관계에서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하지만, 현재의 보조금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월 지원 금액을 현실적으로 인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관심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아동위탁을 주저하는 잠재적인 일반위탁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 3단계(2017년~계속) : 가정위탁확대를 위한 유자격 위탁부모 모집 확대 및 훈련 강화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금 현실화를 기반으로 일반위탁가정에 관심 있는 잠재적인 위탁부모를 발굴하고 모집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아동발달, 아동학대 및 방임

등 아동양육과 건강한 성장발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일반가정위탁사업의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5~2016년)	제 2단계 (2016~2016년)	제 3단계 (2017년~계속)
주요내용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가정위탁에 대한 지원 현실화	가정위탁확대를 위한 유자격 위탁부모 모집 확대 및 훈련 강화

4) 관련 법 개정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수준이 아닌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보조금 현실화와 지원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제59조의 비용보조와 관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에 대한 부분과 지원 금액 현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수 있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2016년)에서는 홍보비용으로 150백만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6~2017년)에서는 지원 금액 현실화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월 300,000만원 증액을 통해 3,600백만원이 소요된다. 3단계(2017년)에서는 양육보조금을 좀 더 인상하고 일반위탁가정의 교육훈련 및 모니터링을 위해 6,16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위탁가정에 대한 월 보조금의 예산은 정부에서 국고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함으로써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5~2016년)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 방송콘텐츠 제작	100,000,000원
		· 인터넷 및 SNS 통한 캠페인	50,000,000원
2단계 (2016~2017년)	일반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현실화	· 일반위탁가정에 대한 보조금 인상 일반위탁아동 1,000명×월300,000원×12개월	3,600
3단계 (2018년~계속)	가정위탁확대를 위한 유자격 위탁부모 모집 확대 및 훈련 강화	· 위탁부모 모집광고	10,000,000원
		· 위탁부모 교육훈련비	100,000,000원
		·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50,000,000원
		※ 일반위탁아동 1,000명×월500,000원×12개월	6,000
총계			9,910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2013년 현재 일시쉼터 21개, 단기쉼터 50개인데 비해 중장기쉼터는 32개소 수준으로(여성가족부, 2013), 대부분의 쉼터의 거주기간이 짧아 가정폭력 및 학대 등으로 빠른 시간 내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가출청소년의 경우 기본적인 생존과 발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쉼터의 대부분이 일시 및 단기쉼터여서 전국 쉼터를 떠돌아다니는 가출청소년(예, 쉼돌이, 쉼순이), 가출청소년가족(예, 가출팸)이 증가하고 있는데(김희진, 2014),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 경우 결국 홈리스청소년이 될 수 있다.

대부분 10명 내외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소규모의 쉼터 특성상 개소 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지역별, 성별 균형(현재는 남자청소년쉼터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맞추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도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가출경험 청소년들이 가출관련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쉼터 확대 뿐 아니라 홍보를 통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시설수가 부족한 이유뿐 아니라 청소년 친화적 쉼터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쉼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가출청소년을 위한 인권보호와 이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종사자 교육도 필요하다.

2) 주요 내용

① 청소년쉼터의 인프라 확충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의 일시 및 단기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쉼터 개소수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출청소년들을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일은 쉼터의 중요 역할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중장기쉼터의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

② 시설환경 개선

쉼터의 환경을 청소년 친화적으로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쉼터에서의 생활보다는 가출팸이나 홈리스를 더 선호하지 않도록 쉼터에서의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개선이 필요하다.

단체생활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개인공간과, 더불어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③ 종사자대상 인권교육 강화

많은 청소년쉼터 종사자들이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권에 기반하여 쉼터에서의 청소년들의 생존과 발달, 참여권을 보장하는 실천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인권교육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5년~2016년) : 청소년쉼터의 인프라 확충

전국의 청소년 수와 기출청소년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시 및 단기쉼터와 중장기쉼터를 확대한다. 현재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중장기쉼터에 초점을 둔다.

② 제 2단계(2016년~2017년) : 시설환경 개선

기존 청소년쉼터가 청소년 친화적 공간이 되도록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고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도 함께 마련한다. 무엇보다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보안을 더욱 고려한다.

③ 제 3단계(2018년~계속) : 종사자대상의 인권교육의 필요성

가정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생존과 발달, 그리고 쉼터 생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인권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가정에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의 자립지원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5~2016년)	제 2단계 (2016~2017년)	제 3단계 (2018년~계속)
주요내용	청소년쉼터의 인프라 확충	시설환경 개선	종사자대상의 인권교육의 필요성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2016년)에서는 일시 및 단기컴퓨터와 중장기컴퓨터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약 3,000백만원이, 2단계(2016~2017년)에는 기존 컴퓨터의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1,000백만원, 3단계(2018년)에서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2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5~2016년)	청소년컴퓨터의 인프라 확충	· 일시 및 단기컴퓨터 설립·운영비 300,000,000원 × 5개소	1,500
		· 중장기컴퓨터 설립·운영비 300,000,000원 × 5개소	1,500
2단계 (2016~2017년)	시설환경 개선	· 시설 개·보수 10,000,000원 × 100개소	1,000
3단계 (2018년~계속)	종사자대상의 인권교육의 필요성	·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200,000,000원	200
총계			4,200

4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관련 정책과제(안)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의 세대 및 세대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모자가족뿐 아니라 부자가족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은 발달상에 있어서나 주변 환경적인 측면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다른 가정유형의 아동청소년에 비해 가장 낮고, 우울감은 가장 높았으며, 또 행복도는 가장 낮았고, 자살에 대한 생각은 조손가정과 함께 가장 높았다. 또한 학업 및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심리정서적인 면에 있어 취약함을 보였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특성상 야간 방임 비율도 가장 높았으며, 질병 및 결식, 결석 시 부모의 무관심 비율이 양부모 가정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가정의 증가와 또 이러한 취약한 면에 대한 조사결과는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발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2) 주요 내용

①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서비스 우선 제공

본 연구의 인권실태조사에서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심리·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고민거리 대화 상대의 경우 조손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학교상담교사나 청소년상담기관 종사자등 전문가들과의 고민상담비율도 낮았다(고민대화상대로 또래가 가장 많았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심리·정서적 서비스가 필요한데, 학교나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를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1차적인 관심을 갖고 전문적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으며 좋은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멘토링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② 역량강화위한 학업지원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은 학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실제로도 다른 가정유형에 비해 학업성적인 낮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야간방임비율과 질병 및 결석, 결석 시 부모의 무관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을 고려할 때,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지원과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더욱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③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본 인권실태조사 결과, 한부모가정이면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심리정서적 측면이나 방임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이 더욱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특히 발달 및 교육과 관련하여)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5년~2016년) :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서비스 우선 제공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이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의 학교나, 주요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 등에서는 이들을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상담서비스에 의뢰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멘토를 선정·매칭하여 이들에게 심리정서적인 지지와 함께 진로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② 제 2단계(2016년~2017) : 역량강화위한 학업지원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이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학교, 또는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우선순위에 들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이들의 학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③ 제 3단계(2018년~계속) :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저소득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받지만, 특히 아동청소년이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우 생존 및 발달을 위한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정수준의 가구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 아동청소년의 부모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5~2016년)	제 2단계 (2016~2017년)	제 3단계 (2018년~계속)
주요내용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서비스 우선 제공	역량강화위한 학업지원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2016년)에는 전문적인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 제공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100백만원이 소요되며, 2단계(2016~2017년)에는 학업지원서비스를 위해 3,0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산은 국고로 지원하되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통하여 지원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와 드림스타트를 통해서 지원한다. 3단계(2017년)부터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한하여 생계비지급에 추가지원을 고려하며, 이들 청소년들의 한부모의 취업기회 제공 등 소득향상 방안을 모색한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5~2016년)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서비스 우선 제공	·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 제공 200,000원×20,000명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100,000,000원	4,000 100
2단계 (2016~2017년)	역량강화위한 학업지원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학업지원서비스 300,000원×10,000명	3,000
3단계 (2018년~)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추가지원 · 부모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 제공	-
		총계	7,100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우리 정부에서는 자살예방센터, 정신보건센터의 설립 등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OECD 31개국의 아동·청소년(10~24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000년 7.7명에서 2010년 6.5명으로 감소했으나,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2000년 6.4명에서 2010년 9.4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증가속도는 칠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타났다⁶⁾. 청소년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자살률 증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자살 관련 사회적, 가정적 요소의 조사, 아동·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활동 등을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청소년자살 예방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청소년자살예방정책을 국가정책의 높은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청소년자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주요 내용

①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 수행

청소년자살의 원인 규명과 프로그램 개발을 국가의 중요한 사업으로 선정하여 운영한다. 교사, 사회복지사, 의사, 상담사 등 관련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청소년자살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로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② 청소년자살 진단 검사 확대 및 고위험자 집중치료 실시

청소년들의 자살위험을 감지 및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또한 자살 고위험자로 판명된 청소년의 경우에 상담치료, 약물치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6) 연합뉴스(2013.9.10.). 청소년 자살 10년간 57.2% ↑ ...증가를 OECD 2위 웹 사이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9/09/0200000000AKR20130909175800017.HTML?input=1179m>에서 2014년 10월 29일 인출.

③ 청소년 자살예방 지원체계 구축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자살 예방 업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학교, 병원 등 관련 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자살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 지원, 사례관리, 실무자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김영지 외, 2013).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5~2016년) : 청소년자살 예방정책을 위한 기반 조성

청소년자살의 원인 규명에서부터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청소년자살 조기 진단 및 고위험자 치료 등 청소년자살 예방 정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청소년자살 예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부처 청소년자살 관련 업무 부서 및 지자체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② 제 2단계(2017년) :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조기진단 및 치료 강화

청소년자살 원인 규명 연구에 기반해서 청소년 유형별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유형별로 현장 시범·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을 점검한다. 또한 청소년자살 예방을 위한 조기진단 및 고위험자 집중치료를 강화한다.

③ 제 3단계(2018년~) : 청소년자살예방 지원체계 구축·운영

중앙 정부부처에 청소년자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내 청소년자살 예방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5~2016년)	제 2단계 (2017년)	제 3단계 (2018년~계속)
주요내용	· 청소년자살 예방정책을 위한 기반 조성	· 범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조기진단 및 치료 강화	· 청소년자살예방 지원체계 구축·운영

4) 관련법 개정사항

정신건강 관련법에 자살 관련 예방 및 사후관리 지원 조항을 추가하고, 청소년자살 예방을 위해 청소년자살 관련해 사회적, 가정적 요소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규정한다. 또한 정부부처의 청소년자살 업무조정을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과 지역별 추진기구로 지자체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6년)에는 청소년자살 예방 정책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로 100백만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6년)에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진단검사 및 치료 지원비로 2,000백만원이 소요되며, 3단계(2017~)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진단검사 및 치료 지원비, 지원체계 구축 운영비 등으로 3,06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는 전액 국고로 운영하고, 2단계와 3단계는 국고와 지방비로 운영하도록 한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5~2016년)	청소년자살 예방정책을 위한 기반 조성	· 연구비	50,000,000원 × 2건	100
2단계 (2017년)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비	100,000,000원 × 3종	300
	청소년자살 진단 검사 확대 및 고위험자 집중치료	· 운영비	100,000,000원 × 17개 지역	1,700
3단계 (2018년~)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 운영비	50,000,000원 × 17개 지역	850
	청소년자살 진단 검사 확대 및 고위험자 집중치료	· 운영비	100,000,000원 × 17개 지역	1,700
	청소년자살예방 지원체계 구축	· 운영비	30,000,000원 × 17개 지역	510
		총계		5,160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장애청소년들은 학업이나 취업을 하지 못한 채 무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르바이트나 취업의 과정에서도 장애를 이용한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현재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장애청소년들의 진학률이 43.5%이고, 취업률이 13.5%, 무직률이 42.9%이며, 장애청소년의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교육부, 2013). 또한 문화원장이 타이핑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거나 집안사정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하던 여고생과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전단 제작업체의 사례⁸⁾ 등도 나타나고 있다.

장애청소년들의 취업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및 교육청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학교에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많은 인력이 부족하며, 장애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일거리가 확보되어 있다. 또한 학교는 다른 일터에 비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장애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많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학교와 연계된 장애청소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2) 주요 내용

① 장애청소년 학교 인턴제도 운영

장애청소년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학교 인턴제도를 개발해서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 후에 6개월이나 1년 동안 학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턴 과정을 운영한다. 여기에는 장애 유형 및 정도별 일자리 형태 및 일자리 참여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함께 개발한다.

② 장애청소년 학교 배치 의무화

장애청소년들의 장애 정도에 맞춰서 초·중·고의 도서관, 의무실, 행정실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7) 한라일보(2014. 5. 7.). 사회 지도층까지... 장애인 성폭행 심각 웹 사이트 <http://www.ihalla.com/read.php3?aid=1399388400462465044>에서 2014년 11월 3일 인출.

8) 뉴스1(2014.5.19). 여고생·지적장애 '알바' 성폭행·해고 사장, 구속기소 웹 사이트 <http://news1.kr/articles/?1681314>에서 2014년 11월 3일 인출.

1개 학교에 1명 이상의 장애청소년 배치를 의무화 한다. 학교 인턴제도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5년) : 장애청소년 인턴제도 개발

장애청소년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로청소년으로 일정기간 일할 수 있도록 학교 인턴 매뉴얼 개발과 함께 학교 장애청소년 인턴제도를 개발한다.

② 제 2단계(2016년) : 시범운영

서울, 경기 등의 초·중·고등학교 각각 5개교 총 15개교를 대상으로 장애청소년 인턴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③ 제 3단계(2017년~) : 장애청소년 학교 배치 의무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최소 1인 이상의 장애청소년 배치를 의무화 한다. 단, 교육청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5년)	제 2단계 (2016년)	제 3단계 (2017년~계속)
주요내용	· 장애청소년 인턴제도 개발	· 시범운영	· 장애청소년 학교 배치 의무화

4) 관련법 개정사항

초중등교육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장애청소년 인턴제도 운영 및 의무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년)에는 장애청소년 인턴제도 개발을 위한 연구비로 50백만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6년)에는 시범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72백만원이 소요되며, 3단계(2017~)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확산되는 비용으로 운영비에 132,0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와 2단계 예산은 전액 국고로 운영하고, 3단계는 국고와 지방비로 운영하도록 한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5년)	장애청소년 인턴제도 개발	· 연구비 50,000,000원 × 1종	50
2단계 (2016)	시범운영	· 시범운영비 800,000원 × 6개월 × 15개교	72
3단계 (2017년~)	장애청소년 학교배치 의무화	· 운영비 1,000,000원 × 12개월 × 11,000개교	132,000
		총계	132,122

5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관련 정책과제(안)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① 연도별 학업중단율의 증가

한국의 초·중·고 전체 학생 수 중 현재 매년 7만 명이 넘는 아동 및 청소년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초등학교에서 2000년에 0.4%의 학업중단율이 2011년에 0.6%로 증가된 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2000년에 0.7%였던 학업중단율이 2013년에는 0.9%로 증가되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차츰 줄어드는 추세지만 2013년에 1.8%로 높은 수치임.

아동 및 청소년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국가에 있어 큰 사회문제이고, 향후 이들을 학교와 사회에 다시 진입시키기 위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에게는 인권적 측면에서 학습권과 발달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위의 현황을 볼 때에 줄어들고 있지 않은 초등과 중등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② 학교를 자퇴하고 싶은 층동의 가진 학생들의 증가

2014년에 전국의 초등학교생 2,975명, 중학생 3,662명, 고등학생 3,847명에게 학교를 자퇴하고 싶은 층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에 자퇴 층동이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27.7%로 나타나 10명 중 3명 가까이가 학교를 자퇴하고 싶은 층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위의 조사결과를 학교유형별로 보았을 때에는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학생들이 41.5%로 자퇴 층동이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 학생들이 34.9%, 중학생 25.2%, 초등학교생 14.4%로 나타나 학업스트레스가 많은 학교유형이 상대적으로 자퇴 층동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응답학생들에게 자퇴 층동의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에 전체 1순위의 응답은 공부하기 싫어서가 3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35%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학교 자퇴 층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조사결과이다.

특히, 중학생들은 자퇴 층동의 이유로 45%가 '공부하기가 싫어서'라고 응답하여 학교유형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들을 위한 다른 교육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① 정책 주요내용

가. 중학교에 새로운 학교형태의 직업준비 학교체제 도입

현행 대한민국의中等교육 과정에는 고등학교에만 전문계고와 특성화고와 같은 직업교육을 위한 학교유형이 존재하고 있어 중학교의 인문 교과과정에 적응하지 못하여 위에서 서술한 실태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학생들이 많으므로 중학교에도 전문계고와 특성화고와 연계될 수 있는 직업준비 학교 체제를 도입함.

나. 독일의 직업교육 제도 이중체제(dual system)의 중장기적 도입

독일은 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미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인문계, 전문계, 직업계 학교로 학생들을 진학시키고 있어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일찍부터 수준별 학교에 입학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 진보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에서는 대체적으로 진보적인 교육정책에 의거해 이러한 조기 선별이 학생들의 가능성을 막고 있다고 하여 중학교를 마치고 나서 인문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시키고 있음.

독일의 이러한 세 종류 학교로의 조기 선별 진학체제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 한국의 극심한 경쟁 교육체제에서의 학업중단과 학교부적응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는 독일과 같이 중학교부터 전문계나 직업계 중학교 체제로의 진학체제의 필요성이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함.

독일은 전통적으로 직업교육 체제에 있어서 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직장에서의 실무교육을 교육과정에서 병행하는 이중체제(dual system)의 직업교육 체제를 중학교에서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고등학교 직업교육에서 실시하고 있어 한국도 이러한 체제를 시범기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5년) : 직업교육 중학교 체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발주

학계에 직업교육 중학교 체제 도입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연구 용역을 3월에 발주하여 9월에 연구결과에 따라 제도도입을 위한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범학교를 지정하거나 신청 받음.

연구 용역 내용에는 현행 특성화중학교가 제대로 직업준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등기술 학교와 같이 중등기술학교를 신설하고 현재 중학교들 중에서 중등기술학교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중등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를 정규학교로 전환시켜 학업중단 청소년과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수용하는 직업학교로의 전환을 검토함.

② 제 2단계(2016년 상반기) : 직업학교로의 전환 시범 중학교 교장들의 독일 직업학교 연수 교육부 직업교육 담당 공무원과 직업학교로 전환을 지정받거나 신청한 중학교 교장들의 독일 직업학교 연수를 통해 향후 직업교육 중학교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함.

③ 제 3단계(2016년 하반기) : 직업교육 중학교 체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 실시 교육부 관계자와 직업교육 전환 지정 및 신청 중학교 교장, 법학자, 교육학자 등이 모여서 직업교육 중학교 체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정 작업을 실시하고 연말에 공청회를 개최함.

④ 제 4단계(2017년~2018년) : 직업교육 중학교 체제 전면 도입 전 직업교육 학급의 시범적 운영 본격적인 직업교육 중학교 체제의 전면 도입 이전에 직업교육 학교로 지정받거나 신청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욕구조사와 학부모 상담을 통해 직업교육 학급을 중학교 2학년부터 2년 간 시범운영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9년부터 직업교육 중학교로 전환하고 졸업생들을 전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정규학교로 전환된 고등기술학교에 진학시킴.

4) 관련 법 개정 사항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개정과 제44조(고등공민학교) 폐기와 대체조항으로 제44조(중등기술학교) 조항의 신설
- 초·중등교육법 제2의(학교의 종류) 2호 “중학교·고등공민학교”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중학교·중등기술학교”로 개정하고, 제44조(고등공민학교) 조항을 폐기하는 대신 대체조항으로 제44조(중등기술학교) 조항을 제54조(고등기술학교) 조항의 내용에 준하여 신설
- 기존의 고등기술학교와 신설된 중등기술학교를 정규학교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제·개정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①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항목	산 출 내 역			금액
타당성 연구 및 공청회 개최	(2015년)	연구용역 비용	직업교육 중학교 체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발주 및 조사결과에 따른 공청회 개최	90
소계	전국 초등 6학년과 중등 2학년 학생 대상 실태조사 실시 포함			
독일 직업학교 교장 연수	(2015년 상반기)	독일 연수 비용	직업교육 중학교 지정 및 신청 학교 교장들의 독일 직업교육 연수	600
소계	향후 제도도입 초기에 매년 연수 실시			
직업교육 중학교 체제 법제화	(2015년 하반기)	법제화 비용	직업교육 중학교 체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20
소계	법제화 이후 초기 2년 간 공청회 개최			
직업교육 학급의 시범운영	(2017년~2018년)	시범운영 비용	직업교육 중학교 체제 전환 중학교의 학급단위 시범운영	20,000
소계	2년 간 시범운영			
	합 계			20,710

② 예산조달방법

가. 4개 정책과제

중앙정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이 매칭펀드 형태로 각 70%, 30%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국비와 지방비로 재원을 마련함.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① 아동 및 청소년의 인성교육 시간의 부족

최근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인성은 성인들이 우려할 정도로 발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장차 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진입하여 각 위치에서 사회를 움직일 때에 미래 사회의 방향은 매우 도덕적으로 혼탁한 사회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음.

교육부는 2013년에 와서야 처음으로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적 시도를 시작하여서 인성교육 실천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실적에 따라 우수학교 모델로 지정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이러한 때늦은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16개 광역시·도에서 지정되어 인성교육을 실천한 시범학교와 우수학교는 2013년에는 각 30개교와 40개교 정도였으며, 2014년도에는(8월 현재) 시범학교가 34개로 늘어났으나 이는 전국의 초·중·고 학교 수가 2013년 6월 기준 11,462개인 것을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수치이므로 인성교육 시간을 대폭 늘리기 위하여 도덕 교과목을 초·중등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2) 주요 내용

② 정책 주요 내용

가. 도덕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현재 대부분의 초·중·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 이수되고 있는 도덕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단위를 최소 1단위 이상으로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

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인성교육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및 필수 이수 활동으로 지정
현재 교과외 과목으로 수행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활동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이를 필수 활동으로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교육부 지침으로 정하여 전국의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 권고함.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5년) : 도덕 교과목을 필수과목 이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 이수되고 있는 도덕 교과목에 한하여 인성교육
의 차원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최소한 이수단위를 1단위 이상으로 하되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2단위 이상을 의무 이수단위로 편성하고 중학교 과정부터는 1단위 이상으로 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청회를 거쳐 시행함.

현재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수행되고 있는 교과외 과목인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인성교육 활동프
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만들어 전국의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전달함.

4) 관련 법 개정 사항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의 개정 혹은 교육부 지침 마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에 ③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법 제2조에 속하는 학교는 도덕
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주당 최소 1단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초등 교과과정에서는 최소
2단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한다”로 명시하여 도덕 교과가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이 되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위의 내용으로 교육부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의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
시행토록 함.

②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인성교육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의무적 수행

교육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전국의 시·도 교육청 및 지역청에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 인성교육을 위한 활동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권고할 것을 전달함.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①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항목	산 출 내 역			금액
공청회 개최	(2015년)	공청회 비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개정 후 공청회 개최	12
소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후 공청회			
인성교육 활동 프로그램 개발	(2015년)	프로그램 개발 비용	비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행 시 인성교육 활동프로그램 개발	200
소계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인성교육 활동프로그램 개발 보급			
합 계				212

② 예산조달방법

가. 2개 정책과제

공청회 개최 비용과 창의적 체험활동 차원의 인성교육 활동프로그램 개발 보급 비용은 전부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비로 재원을 마련함.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① 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적 심리 및 정서 불안의 원인인 교육제도
2014년에 전국의 초등학교 2,975명, 중학생 3,662명, 고등학생 3,847명에게 물어보았을 때에 자퇴
충동이 있었던 학생이 27.7%로 10명 중 3명이나 되었는데 자퇴 충동의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에
전체 1순위의 응답이 공부하기 싫어서가 3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성적이 좋지 않아서
35%로 나타나 학생들이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학교 자퇴 충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중학교의 학생들은 자퇴 충동의 이유로 45%가 공부하기가 싫은 것을 이유로 응답하여 학교유형
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교육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② 대학입학 준비를 위한 과도한 학업시간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시간 부족
평일의 여가활동 시간에 관하여 전국의 초·중·고 10,456명의 청소년들에게 물었을 때에 1시간미만
으로 응답한 학생들은 24.1%로 나타났고, 1시간이상~2시간미만으로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아 28.0%
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일에 2시간의 여가시간도 가지지 못하는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52.1%에
해당되고 있다는 수치여서 한창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발달권과 여가 및 문화 향수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교육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시간의 부족 이유를 말해주는 실태조사 결과로는 위의 응답결과를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에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학생들이 초등학교 17.6%, 중학교 14.8%, 특성화고
13.9%에 비하여 1시간 미만에 43.1%로 응답한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역시 대학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가장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대학입학 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전반적인 교육제도의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함.

한국은 UN의 아동권리협약의 비준 국가로서 당연히 아동권리협약을 내용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고, UN으로부터 한국의 아동들이 과도한 학업시간으로 인해 여가 및 문화 향수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시정을 권고 받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 교육제도가 더욱 심한 경쟁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혁명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2) 주요 내용

① 정책 주요 내용

가. 단기적으로 대학교 서열화를 완화하는 교육제도의 도입

한국에서 교육의 가장 큰 고질적 문제는 대학교가 서열화 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이는 다시 학벌사회를 조장하게 되며, 이로 인해 특정집단의 소수가 사회를 지배하고 심한 사회적 불평등과 불균형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서열화를 완화하는 교육제도로 먼저 국공립대학부터 평준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국공립대학 중 이미 법인화된 서울대학교만을 국가가 특별법으로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발시대애나 필요했던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폐기하고 대신 전국의 국공립 대학들의 교과과정을 통합하고 입학 기준과 모든 지원을 평준화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개혁 법안을 제정함.

나. 중장기적으로 유럽의 독일 및 프랑스 대학교평준화 교육제도의 도입

한국의 사립대학들은 국가의 재정이 열악하여 국민의 수요에 따라 국공립 대학을 설립할 수 없을 때에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대학을 유치한 결과이며, 현재는 한국이 교육의 공공성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을 갖추고 있기에 고등교육은 국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을 꾀하여야할 시점임.

현재 한국은 출산율의 저조로 인해 대학입학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사립대학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대학의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경영이 어려운 대학들을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인수한 후 국공립대학으로 통폐합해서 국공립대학교 평준화 네트워크 안에 진입하도록 유도함.

국공립대학은 대학교평준화의 상징적 의미와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프랑스가 1968년에 교육개혁을 통해 파리1대학, 파리2대학, 파리3대학 등으로 평준화 이념을 담아 대학의 이름을 개칭한 것과 같이 향후 평준화된 한국의 국공립대학교의 명칭도 개명하는 시도가 바람직하고, 사립대학들은 완전히 자율적 경영을 허용하되 국공립대학교의 평준화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경우에만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평준화체제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함.

현재 서열화된 대학입학을 위하여 전국의 초·중·고 학생, 그들의 부모가 평생 겪고 있는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고통과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비 부담을 볼 때에, 그리고 학벌로 인한 사회계층 간의 갈등과 권력의 지배구조를 볼 때에 이러한 대학교평준화 방향의 교육제도의 개혁은 한국사회 전반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 확실하며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국민적 과제임.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5년~2017년) : 대학교평준화를 지향하는 교육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대학교평준화의 문제해결은 귀납적 문제해결 접근방식보다는 연역적 문제해결의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하는데 이는 대학교평준화를 저지하려는 소위 명문대학 출신들의 집요한 방해공작과 여론의 선동적 왜곡과 호도가 예상되므로 2018년 대통령의 임기 초기에 전격적으로 대학교평준화 제도의 국가적 도입이 대국민 성명과 함께 발표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하고 세부적인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② 제 2단계(2018년~2022년) : 대통령특별정부기구 설치를 통한 대학교평준화제도 시행

교육의 중앙정부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교육제도 혁신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문제의 핵심인 대학교 서열화 타파를 위하여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교육제도를 혁신하는 대통령 특별정부기구를 설치하고 유럽의 프랑스 및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학교평준화 제도의 도입을 대국민 성명서 발표와 함께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그 동안 연구·검토되었던 제도의 법제화와 새로운 고등교육정책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4) 관련 법 개정 사항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전면 개정

대학교평준화 제도의 도입은 먼저 대학교평준화 제도 도입에 따라 고등교육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된 후에 대학진학의 방향이 변화되는 것에 따른 초·중등교육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①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항목	산 출 내 역			금액
교육제도 혁신 연구	(2015년~2017년)	연구용역 비용	프랑스 및 독일의 대학교평준화 제도의 연구와 관련법 제정을 위한 선행연구 실시	600
소계	매년 용역비 2억으로 연구 및 교육부관계자 연구진과 동반 유럽 출장			
교육혁신정부기구 설치 및 운영	(2018년~2022년)	정부기구 설치 및 운영 비용	대통령 임기 동안 대학평준화 제도가 안착할 수 있기 위한 대통령특별정부기구 설치 및 운영	2,500
소계	매년 대통령특별정부기구 운영 경비로 50억 소요			
합 계				3,100

② 예산조달방법

가. 2개 정책과제

중앙정부가 국비로 재원을 마련함.

ISCED 1					ISCED 2					ISCED 3			ISCED 4			ISCED 5					ISCED 6																			
Primarstufe					Sekundarstufe I					Sekundarstufe II			Ausbildung			Tertiärbereich					Quartärbereich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	3	1	2	3	4	5	—																			
Grundschule					Sekundar- schule					Abitur			Meister			Bachelor			Ma- ster		Promotion etc.																			
Grund- schule													OS											Fachschul- e (z.B. Staatlich geprüfter Techniker)			Weiterbildung													
					Gymnasium					Oberstu- fe G8														→						Universität										
					Gesamtschule					Oberstufe G9																				Kunsthochschule										
					Realschule					BF S														BA S						FO S			FOS 13			Pädagogische / Theologische Hochschule				
					Haupts- chule					erw.														Duale Ausbildung						Berufs- akademie					Fachhoch- schule					
					BVJ					BGJ					↗																									
Sonderschule																																								

6

‘특별보호조치’ 관련 정책과제(안)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으로 “난민 및 망명희망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등록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483).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들 아동에 대한 권리보장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난민 또는 난민 지위를 신청한 부모,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무국적자 등 출신국과 문제가 있는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들 아동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아동의 체류, 교육, 보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2) 주요 내용

①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 법안에는 최소한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체류자격 부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의 보장, 의무교육 보장,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 보장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② 외국국적 아동 출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

이주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부모의 법적 지위, 출생지역, 장소 등과 관계없이 국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가족관계등록부작성에 관한 신고 이외의 가족관계등록신고로 처리하여 접수장에 기록하고 특정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관만 할뿐 출생사실 증명이나 신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공식문서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특종신고편철' 제도를 보완하여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부'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고, 이에 기반해서 '외국국적 아동 출생증명서'를 발급한다. 해당 증명서에는 최소한 출생등록 및 증명사항으로 출생자의 이름, 출생연월일, 출생지, 주소 및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출신국가 등이 기재되도록 해야 하며 출생증명서 상에 기재되는 문구도 출생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5~2016년) : 사회적 합의 도출

현재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과 관련해서 무분별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내용을 상호 조정하거나 여론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② 제 2단계(2016~2017년) : 법·제도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을 제정하고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특종신고편철 제도를 보완하여 외국국적 아동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 3단계(2018년~) : 법·제도의 시행 및 관련 지원

이주배경 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이행을 위해서 이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5~2016년)	제 2단계 (2016~2017년)	제 3단계 (2018년~계속)
주요내용	· 사회적 합의 도출	· 법 · 제도화	· 법 · 제도의 시행 및 관련 지원

4) 관련법 개정사항

이주아동의 건강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 아동의 국내출생에 관한 등록과 신고’와 같은 별도 조항과 관련 시행규칙과 서식의 개편이 필요하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3단계 (2018년~)	법 · 제도의 시행 및 관련지원 · 추후 예산반영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그동안 많은 조사 연구에서 청소년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아오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저임금 주지위반, 연소자증명서 비치 위반 등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청소년근로자에 대한 범위반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보장, 초과근무, 임금체불 등의 부당처우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근로시 부당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연소근로자 사업장뿐만 아니라 근로에 참여하는 청소년, 정부의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에 연소근로자 사업주의 개선 노력과 더불어 근로청소년의 법 지식과 신고의식,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2) 주요 내용

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개발 교육 및 사례 배포

청소년들이 근로 과정에서 부당처우를 받게 될 경우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권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며, 노동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부당 처우 및 대응 사례 등에 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근로수첩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② 청소년근로자 근로조건 확인 앱(App) 개발·운영

청소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지방고용사무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앱(App)을 개발하여 연소근로자 사업장 고용주와 청소년들에게 보급함으로써 임금, 근로시간 등 연소근로자 근로조건에 관한 범위반 사항을 지방고용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범위반시 처벌 강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최저임금 미지급 등 연소근로자에 대한 부당처우가 해소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이 범위반을 반복할 경우에 가중 처벌하도록 법을 규정을 강화한다.

④ 청소년노동옴부즈맨 운영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노동·일자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어 있는 청년유니온(youth community union)으로 하여금 청소년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는 청소년노동 옴부즈맨으로 활용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5년) : 기반 조성

청소년근로수첩을 제작하고, 청소년근로자 근로조건 확인 어플(App)을 개발하며, 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노동옴부즈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제반 조건을 준비한다.

② 제 2단계(2016년) : 시범운영

서울, 경기 등의 지방고용사무소와 함께 개발된 청소년근로자 근로조건 확인 어플(App)을 활용하여 시범 운영하며, 청소년노동옴부즈맨의 경우에도 일정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한다. 1~2개 지역에 청소년근로수첩을 제작하여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효과를 확인한다.

③ 제 3단계(2017년~) : 제도화 및 확산

시범운영을 통하여 확인된 청소년근로자 근로조건 확인 어플(App)과 청소년노동옴부즈맨제도를 전국지역으로 확산시킨다. 또한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연소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시범지역에서의 효과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전국적으로 청소년근로수첩의 제작 및 보급을 확대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5년)	제 2단계 (2016년)	제 3단계 (2017년~계속)
주요내용	· 기반조성	· 시범운영	· 제도화 및 확산

4) 관련법 개정사항

근로기준법(제5장 여성과 소년) 상에 연소자 증명서 비치 의무 등을 제출 의무로 하고, 동일 법 위반시 처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년)에는 청소년근로수첩 제작, 앱(App) 및 시스템 개발비로 180백만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6년)에는 시범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160백만원이 소요되며, 3단계(2017~)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확산되는 비용으로 관리비 및 운영비에 1,52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와 2단계 예산은 전액 국고로 운영하고, 3단계는 국고와 지방비로 운영하도록 한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1단계 (2015년)	청소년 근로수첩 제작·보급	· 개발비	30,000,000원 × 1종	30
	청소년근로자 근로조건 확인 어플(App) 개발·운영	· 어플(App)개발비 · 시스템 구축비	50,000,000원 × 1종 100,000,000원 × 1건	150
2단계 (2016)	청소년 근로수첩 제작·보급	· 제작·보급비	5,000원 × 10,000부	50
	청소년근로자 근로조건 확인 어플(App) 개발·운영	· 관리비	50,000,000원 × 2개 지역	100
	청소년노동옹호부즈맨 운영	· 운영비	10,000,000원 × 2개 지역	10
3단계 (2017년~)	청소년 근로수첩 제작·보급	· 제작·보급비	5,000원 × 100,000부	500
	청소년근로자 근로조건 확인 어플(App) 개발·운영	· 관리비	50,000,000원 × 17개 지역	850
	청소년노동옹호부즈맨 운영	· 운영비	10,000,000원 × 17개 지역	170
			총계	1,860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한 번의 성폭력 피해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삶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등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청소년들은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 또한 상당수의 아동·청소년들은 성폭력 피해 후 수사,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성폭력 피해 시 2차 피해를 두려워하여 수사기관 등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피해에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성폭력 피해 시 이들 아동·청소년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고, 수가, 재판단계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①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 만남사이트 규제법 제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청소년을 성매수 하는 것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본의 만남사이트규제법(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같이 인터넷 상의 만남사이트 게시판 등에서 청소년 성매수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하는 만남사이트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한다.

② 성폭력 피해 취약 대상의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초등학교, 지적장애 청소년 등 성폭력 피해에 특별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 및 관련 기관에서는 이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상담 앱(App) 개발·운영

성폭력 피해 시 아동·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도록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상담 앱(App)을 개발하여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운영한다. 현재 마이피플이라는 앱을 통해서 학교폭력 피해 상담창구 ‘상다미쌤’을 운영하여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앱을 개발하여 상담전문가와 친구를 맺기만 하면, 익명으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자료의 전송 및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④ 성폭력피해 청소년의 2차 피해 방지제도 개발·확산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에 수사,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이 수사단계에서 반복된 진술을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현재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공동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는 성폭력피해자 진술조사 화상협력시스템⁹⁾, 수사의 전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등을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5년) : 성폭력 예방 관련 법·제도 검토 및 프로그램 개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 만남사이트 규제법, 성폭력피해자 진술조사 화상협력시스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등을 검토한다. 또한 취약 대상의 성폭력 프로그램 및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상담 앱(App)을 개발한다.

② 제 2단계(2016년) : 법·제도 개선 및 프로그램 시범 운영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 만남사이트 규제법 등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3~4개 초등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을 선정하여 초등학생, 지적장애 청소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며,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상담 앱(App)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시범·운영함으로써 문제점을 점검한다.

9) 미디어다음(2014.5.26.). 성폭력피해자 진술조사 화상협력시스템 시범 운영. 웹 사이트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40526114814173>에서 2014년 10월 24일 인출.

③ 제 3단계(2017년~) : 법·제도 시행 및 프로그램 확산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 법·제도를 시행하며, 시범·운영을 통하여 점검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5년)	제 2단계 (2016년)	제 3단계 (2017년~계속)
주요내용	·성폭력 예방 관련 법·제도 검토 및 프로그램 개발	·법·제도 개선 및 프로그램 시범 운영	·법·제도 시행 및 프로그램 확산

4) 관련법 개정사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 만남사이트 규제법(안)을 제정한다. 이 법은 일본에서 제정·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같이 만남사이트를 통하여 청소년을 성매수로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유인행위를 하는 경우에 만남사이트에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년)에는 프로그램 개발비로 110백만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6년)에는 시범운영비로 120백만원이 소요되며, 전국으로 확산하는 3단계(2017~)에는 58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5년)	성폭력 피해 취약 대상의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 연구개발비	30,000,000원 × 2종	60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상담 앱(App) 개발·운영	· 개발비	50,000,000원 × 1종	50
2단계 (2016년)	성폭력 피해 취약 대상의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 시범운영비	10,000,000원 × 6개 지역	60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상담 앱(App) 개발·운영	· 시범운영비	2,000,000원 × 6개월 × 5명	60
3단계 (2017년~)	성폭력 피해 취약 대상의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 운영비	10,000,000원 × 17개시·도 × 2개지역	340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상담 앱(App) 개발·운영	· 운영비	2,000,000원 × 12개월 × 10명	240
			총계	810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소년사법에서 아동 인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2007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소년법, 행형법, 소년원법 등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최병각, 2007).

하지만 대한민국 제 3,4차 통합 정기보고서를 심사한 후 채택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운영은 청소년범죄율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 원인에 대해서 아동 범죄자를 사회에 효과적으로 복귀하기보다는 징계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년사법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것 등에 있다고 보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즉, 소년사법에 아동 친화적 절차와 공정한 심판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해 청소년 범죄율을 낮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촉구하고 있는 사법 절차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년 전문가로 구성된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① 소년사법에 아동 친화적 절차 도입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소년사법에서의 아동 친화적 절차를 소년사법에 도입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소년사법에서 아동 친화적 절차가 도입되고 있는 해외 우수사례를 수집·분석하여 국내 소년사법 절차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법률 보조인제도의 확충

소년사건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법률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선임할 수 있도록 소년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인제도를 활성화 한다.

구속되어 자유가 박탈된 소년이나 무겁게 처우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건의 소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조인이 될 변호사와 접견하도록 하는 등 소년사건 전체에 걸쳐 법률적인 도움과 더불어 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갱생에 도움을 주는 보조인 제도를 활성화 한다.

③ 소년전문법원의 설립

소년의 비행행위를 일반 성인 범죄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소년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한다. 소년전문법원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과 같이 대한민국의 전역에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갖추도록 한다. 소년전문법원을 설립을 통해서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관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꾀하고, 소년의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을 심리하도록 함으로써 소년사건을 통일적·유기적으로 관리한다.

④ 소년사법기관 종사자의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강화

경찰, 검찰, 교정직 공무원, 법원 종사자 등 소년사법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육여건을 조성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5~2016년) : 사례조사 및 타당성조사

외국에서 소년사법 절차에 아동 친화적 절차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한다. 또한 법률보조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가의견을 통해서 소년전문법원의 설립 타당성을 조사·분석한다. 소년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인권교육과정 개발 및 매뉴얼을 개발한다.

② 제 2단계(2017) :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및 인권교육 실시

사례조사,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서 분석한 소년사법에의 아동 친화적 절차 도입, 법률보조인 제도 확충 및 소년전문법원의 설립을 실행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 개정, 인적·물적 자원 확보,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소년사법기관 종사자들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③ 제 3단계(2018년~) : 인권교육 및 제도 시행

소년사법의 전 과정에 아동 친화적 절차를 도입하고, 비행소년의 수요에 따른 법률전문가 및 비법률가 보조인을 확충하며, 범죄소년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소년전문법원을 설립·운영한다. 또한 소년사법기관 종사자들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5~2016년)	제 2단계 (2017년)	제 3단계 (2018년~계속)
주요내용	· 사례조사 및 타당성조사 · 교육과정 및 매뉴얼 개발	·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 인권교육 실시	· 제도 시행 · 인권교육 실시

4) 관련법 개정사항

외국의 사례조사 결과에 따라서 소년법 등에 아동 친화적 절차 마련을 위한 법률 제·개정한다. 또한 소년법에 범죄소년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소년전문법원 설립한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소년전문법원의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2016년)에는 교육과정 및 매뉴얼 개발, 조사비 등으로 210백만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7년)에는 연구비, 교육비로 270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3단계(2017년~)에서는 연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예산이 산출될 것이다. 법률보조인 제도의 확충과 소년전문법원의 설립에 따른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나누어 지원하도록 한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5년~2016년)	소년사법에 아동 친화적 절차 도입	· 사례조사비	50,000,000원 × 1건 50
	법률 보조인제도의 확충	· 조사비	50,000,000원 × 1건 50
	소년전문법원의 설립	· 조사비	50,000,000원 × 1건 50
	소년사법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	· 교육과정 및 매뉴얼 개발	30,000,000원 × 2건 60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2단계 (2017년)	소년사법에 이등 친화적 절차 도입	· 연구비 50,000,000원 × 1건	50
	법률 보조인제도의 확충	· 연구비 50,000,000원 × 1건	50
	소년전문법원의 설립	· 연구비 50,000,000원 × 1건	50
	소년사법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	· 교육지원비 30,000,000원 × 4회	120
3단계 (2018년~)	법률 보조인제도의 확충	· 연구결과에 따라 산출	
	소년전문법원의 설립	· 연구결과에 따라 산출	
	소년사법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	· 교육지원비 30,000,000원 × 4회	120
		총계	600

워크숍자료집 14-S45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인 쇄 2014년 11월 7일

발 행 2014년 11월 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정보자료·전산보안팀)